

환경유해인자

환경유해물질조사

유해물질에 대해 인체·생태계 노출수준 및 환경성 질환 발생현황을 모니터 함으로써 환경성질환 물질을 조사하는 사업

<조사분야>

특정지역 분야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오염조사

- 조사대상
어린이집 놀이터,공원,초,중,고등학교
운동장시설

일반지역 분야

■ 취약 계층 및 민간계층 거주공간 환경오염조사

- 노인이용시설,주거공간

<조사항목>

물질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비고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0조관련) -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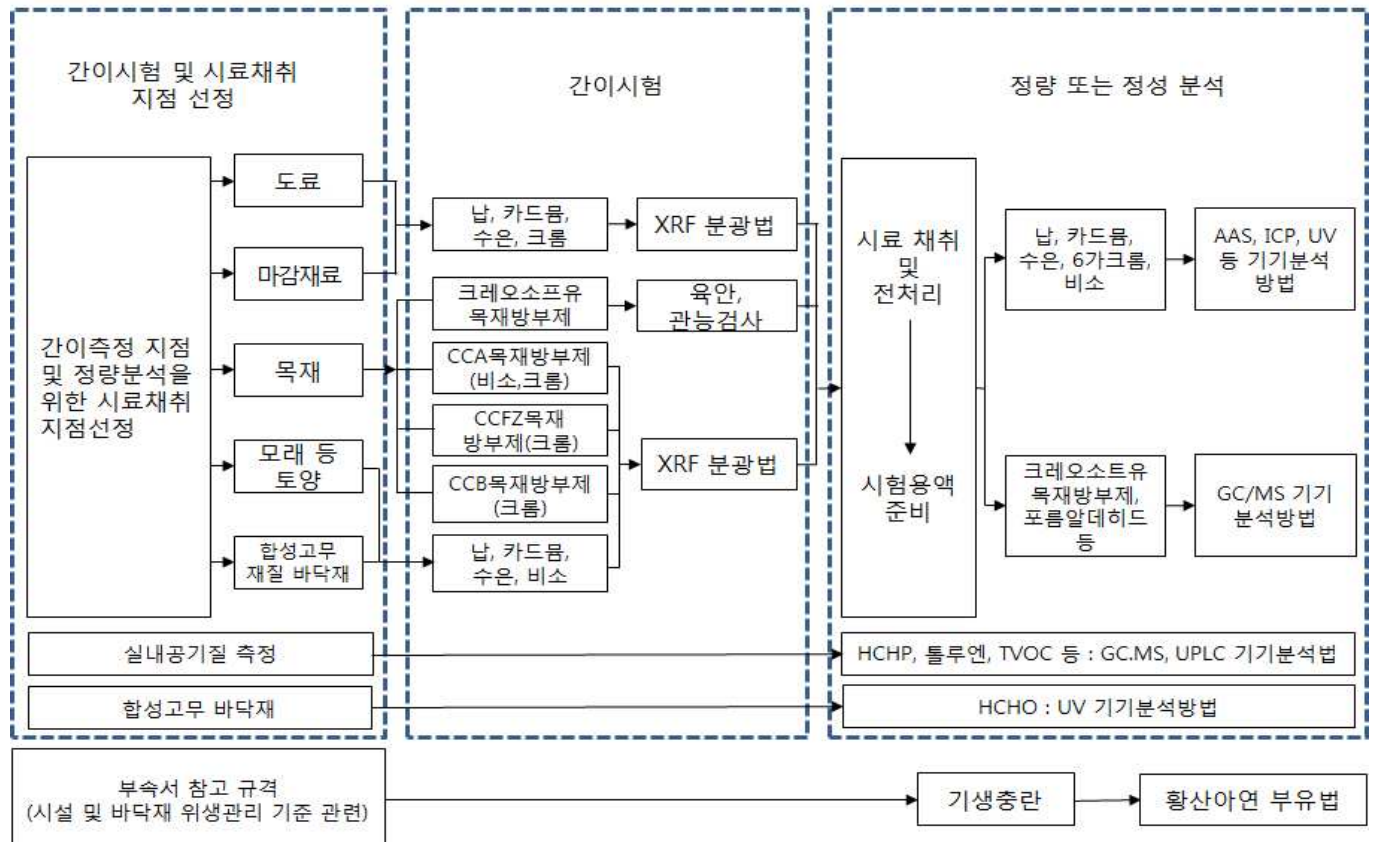
물질

중금속5종:혈중3종
(납,수은,망간)
요중3종
(수은,카드뮴,비소)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1종 : bisphenol A

비고

「환경보건법」
제14조 유해물질 규정

어린이활동공간 현장점검 절차도(안)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 ⑤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 ⑦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 ⑧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 ⑨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조의2 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5.6.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기준

[별표 2] <개정 2019.12.3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 나. 법 제23조 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75mg/kg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농도는 80 μ g/m³ 이하일 것
-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μ g/m³ 이하일 것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본조신설 2014.9.2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 (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검사: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9.2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2. 27.] [환경부고시 제2020-43호, 2020. 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시설)

- 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3월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이하 "활동공간"이라 한다) : 2014년9월25일부터 활동공간을 연면적 33㎡이상 증축하거나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2. 2009년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활동공간
 - 가. 430㎡이상의 사립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치원 교실, 국·공립 어린이활동공간 : 2016년1월1일부터 연면적 33㎡이상 증축하거나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 나.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치원 교실 : 2018년1월1일부터 연면적 33㎡이상 증축하거나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3. 2014년9월25일 이후 신축 또는 신규 인가를 신청하는 시설
4.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제6호에 따른 영업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2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중 놀이형(봉봉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이 설치된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검사절차 등)

- ①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활동공간을 신축·증축·수선을 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보건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규칙 제11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접수를 반려하여야 한다.
- ③ 신청서를 접수한 검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검사는 규칙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④ 검사기관은 기본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거나 정밀검사를 완료한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신청인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한다.

제6조(확인검사 적용예외)

-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한 경우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2.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제품의 잔여분 등

- ③ 제6조제1항 각호에 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별도의 확인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